우리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5년 11월 4일

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워 우리복지관장

I 모집 분야

□ 채용분야

구분	분야	인원	주요업무	비고
기간제 근로자	2급 사업관리자	1명	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이용자 돌봄 제공 이용자 및 보호자 초기면담, 상담 이용자 문서 및 프로그램 제반 서류 관리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사례회의 및 자문위원회 운영 	

□ 임용조건

- 계약기간: 채용일 ~ 2027. 5. 31.(사업 협약기간 만료시까지)
 - ※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1(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)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
 - ※ 사업 해지 등 사업 협약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
- 근무시간: 주 40시간(1일 8시간, 주 5일 근무)
- 근무지: 우리복지관(제주시 산천단남길 40)
- 보수수준: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
- 수당: 명절휴가비, 가족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전문수당 등

응시자격 (공고일 기준)

□ 공통요건

구분	내용	비고
공통요건	∘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~만 60세 이하 ∘ 성별 : 제한없음 ∘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	도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
결격사유	○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○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(종사자) ○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○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결격사유	

※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분야별 자격기준

- ※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서 그 경력기간 내 직급별 추가자격 요건을 충 족하는 자
- 자격기준 [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_주간 개별 제공기관인력기준]
 - 1)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
 - 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(1급. 2급)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
 - 3)「장애인복지법」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
 - 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
 - 5)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
 - 6)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자격기준을 갖춘 사람
 - 7) 「평생교육법」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
 - 8)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
 - 9) 사회복지학, 직업재활·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 교육학, 언어치료학, (사회)체육학, 건강관리학, 음악·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

○ 직급별 추가자격 요건

직급	자격기준
2급 (사업 관리자)	1)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)「초·중등교육법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(1급. 2급) 또는 준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)「장애인복지법」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)「장애인복지법」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)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6)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」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7)「평생교육법」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8)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4년이상인사람 9) 사회복지학, 직업재활·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 교육학, 언어치료학, (사회)체육학, 건강관리학, 음악·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후 장애인 복지 분야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□ 가점 기준(우대사항)

구 분	대 상	가점
취업지원 대상자	·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 ·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 ·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 ·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 ·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 ·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	면접만점 5% 또는 10%
장애인	·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	면접만점 5%
사회적	·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①)	동점자 발생 시
취업	·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(②)	①→③ 순으로
취약계층	·청년 미취업자(만34세 이하)(③)	우대

- ※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 접수시 해당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
- ※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 할 수 없음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Ⅲ 재공고 채용 절차 및 일정

구 분	일 정	비고
재공고	25.11.04.(호) ~ 25.11.11.(호)	
원서접수	25.11.05.(수) ~ 25.11.11.(화)	
서류전형	25.11.12.(수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5.11.13.(목)	
면접시험 (인성·역량 면접)	25.11.17.(월)	
최종합격자 발표	25.11.18.(화)	
임용	25.11.24.(월)	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및 우리복지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서류전형

- 심사방법: 응시자격 기준 적격 여부 심사, 적격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
- 합격배수: 응시자격 부적격,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 면접 응시기회 부여
- 통지방법: 우리복지관 홈페이지 공시

□ 면접전형

- 면접 장소: 우리복지관(제주시 산천단남길 40)
- 면접 방법: 다대다 또는 다대일 정보가림 면접
- 합격 배수: 선발예정 인원 이내
- 면접 평정요소

공적책무성 등	이해력·지식수준	의사발표 정확성·논리성	인성 및 직업관	창의성 및 전문성	배점
20	20	20	20	20	100

○ 통지방법: 우리복지관 홈페이지 공시

□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및 통지

-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, 고득점자 순
- 동점자 처리: 취업지원대상자→장애인→사회적취업취약계층→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
- 예비합격자: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 (면접전형 고득점자 순) 순번(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)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

□ 임용

- (재)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과 근로계약 체결
 - ※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

지원서 접수

□ 제출서류

제출대상	제출서류	비고
필수 제출	 응시원서 [서식1] 자기소개서 [서식2] 직무수행계획서 [서식3]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 [서식4] 주민등록 초본* * 등본 미인정, 개명·병역사항 포함 	(주민등록초본)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 제출
해당자 제출	 자격증 사본 재직/경력 증명서[*](경력자 필수)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재직, 경력 증명서 제출시 필수 첨부)-경력자 필수 졸업증명서(재학증명서) 또는 학위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국가보훈처장 발행)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	(자격증 사본) 보유한(1급, 2급) 자격 모두 제출 (재직/경력 증명서) * 근무기간,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*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추가제출 서류 불인정
최종 합격자	○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○ 기본증명서 ○ 가족관계증명서 ○ 주민등록등본(13자리 모두 표시) ○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(3*4cm) ○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○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○ 기타 요청서류 등 ○ 일반채용신체검사서 ○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관련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○ 범죄경력조회회보서	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(결격사유) 확인용

※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함

□ 접수 방법

- 전자우편(woori-7587942@naver.com) 또는 방문접수
- 접수처: 우리복지관 1층 통합사무실 경영지원팀(제주시 산천단남길 40)
 - ** 방문접수 평일(월~금 09:00~18:00)에만 가능(주말, 공휴일, 점심시간 12:00~13:00 접수불가)

IV

응시자 유의사항

○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.

-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,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,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.
- 입사지원서·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·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, 고의로 누락·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,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.
-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(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)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- * 예외사유: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,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)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
-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불합격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.
- 그 밖에 문의사항은 우리복지관 경영지워팀(070-8808-255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제주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,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(결격사유)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10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2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
- 13. 공직자 및 「공직자 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·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